

2025년도 종합감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 R&D사업 부문 -

2025. 12.



감 사 단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및 범위	1
3. 감사기간 및 인원	1
4. 감사실시 과정	2
5. 감사 중점사항	4
II . 감사결과 총괄	5
1. 총평	5
2. 지적사항 총괄	5
3. 지적사항 요약	5
III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0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0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11
3. 모범사례 일람표	11
V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2
VI . 감사결과 모범사례	44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본 감사는 2025년 연간감사계획에 의거한 종합감사로 기획평가원 R&D 관련 사업본부 업무전반에 걸쳐 업무처리의 합법성, 합리성,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업무상 오류를 시정·예방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하여 업무수행의 가치 증대 및 기관 고유목적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 감사대상 및 범위

감사대상은 ☆☆☆☆부원장 직속부서(★★★★실, ○○○○ T/F, ●●●●●● T/F), ◎◎◎◎◎본부, ◇◇◇◇◇본부, ◆◆◆◆본부, □□□□□□□□본부, ■■■■본부, △△△△본부(▲▲▲▲▲▲▲▲실, ▽▽▽▽실), ▼▼▼▼▼본부(◁◁◁◁◁실) 소속 19개실 및 4개T/F이고, R&D사업본부 업무전반을 감사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중복감사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감사목적 상 필요한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3. 감사기간 및 인원

본 감사는 2025.09.16. 착안사항 발굴 회의 등의 사전조사를 거쳐, 2025.09.25.부터 같은 해 10.01.까지 7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감사반장 1명, 감사인 10명을 투입하여 2025.11.07.부터 같은 해 11.14.까지 6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는 내·외부감사인 검토과정을 거쳐, 2025.12.16.에 상임감사가 최종 확정하였다.

4.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에서는 기획평가원 R&D 관련 사업본부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가. 예비조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지감사 수행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2025.09.25.부터 같은 해 10.01.까지 시행하였으며, 감사인 별로 제척·회피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주요 활동은 감사인 별 중점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였고, 실지감사를 위한 관련 증빙 수집, 감사대상 및 대상자와 감사범위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 실지감사

예비조사를 거쳐 2025.11.07.부터 같은 해 11.14.까지 6일간 감사인원 11명(준감사인 2명, 교차감사인 5명 포함)을 투입하여 감사 중점사항에 기반을 두고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실시 중에는 규정 적용의 적법성 검토, 관련 부서 및 관련자 면담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여 처분 요구사항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 마감회의 및 내부변호인 제도 안내

감사 종료 후에는 관계부서 및 조치부서를 대상으로 실시감사 마감회의(강평)를 실시하여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와 주요 문제점, 개별적인 지적사항 등을 설명하고, 업무상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감사 수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감사대상자의 항변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감사의 신뢰성과 감사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내부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라. 윤리자가진단 및 제3자 검증 시행

감사 종료 후, 감사인은 윤리 자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제3자)이 피감인에게 감사활동 중 감사인의 비위행위 등 윤리준수 적절성을 검토 후 제3자 검증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개별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객관성 유지 및 윤리기준을 준수코자 노력하였다.

마. 감사실무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감사반 전원, 감사부서 직원이 참석하여 감사 처분 요구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제3자)이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체크리스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감사보고서 형식 및 처분요구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바. 심리 및 감사심의위원회

감사보고서에 대한 심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감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요구(안)에 대한 내·외부 감사인 검토를 진행하고 제3자 검증에 의한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5. 감사 중점사항

이번 종합감사는 ☆☆☆☆부의 요청에 따라 기관의 외부강의 등 대외 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R&D 사업 관련 업무추진 전반을 검토함에 있어 적발위주의 감사방식은 지양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컨설팅에 중점을 두었으며, [표 1]와 같이 사전조사 및 예비조사 기간 동안 검토한 감사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미흡사항 적출 등 효율적인 감사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감사규정 및 감사원의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등의 준수를 통해 원칙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였다.

[표 1] 감사 중점 추진사항

연번	분야	중점 점검내용
1	평가 관리	○ 중단(성실) 및 포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보고서 제출 적정성
2	평가 관리	○ 연구개발기관 변경시 양도양수 계약서 제출의 적정성
3	문서 처리	○ R&D 기획·평가·관리 업무의 일상감사 이행 적정성
4	평가 관리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지정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5	제도 개선	○ 수행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 R&D 규정 개선 - 3천만원 이상 외주용역비 변경 기준 명확화 - 수요기업의 범위 확대 -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강화 등
6	평가	○ 선정평가 위원 이해충돌 예방 개선
7	복무 기강	○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한 사전신고의 적정성
8	모범 사례	○ 모범 사례 5건

II. 감사결과 총괄

1. 총평

기획평가원 R&D관련 사업본부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토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백만원]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회수	감액	기타								
20	6	-	-	-	-	-	-	-	1 (1)	2 (5)	2	1	6	-	3	5 (5)

3. 지적사항 요약

【처분요구사항】

1) 양도·양수 협약변경 업무 부적정

양도·양수 협약변경 업무가 관련 규정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평가원 과제 담당자 대상 사업 관리 교육 실시 필요 (통보 1건)

2) 중단(성실)·포기 과제에 대한 수행보고서 접수 업무 지연

중단(성실)·포기 과제의 수행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기획평가원 과제 담당자 대상 사업 관리 교육 실시 필요 (통보 1건)

3)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지정 및 관리 절차 개선

① 안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여 지정하는 안전과제 사전검토 등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하반기에 공고된 연구개발과제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개선 필요 (개선 1건)

② 안전사고 처리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사업부서 및 연구개발기관에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 필요 (권고 1건)

4)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 개선

평가위원의 현재 진행 중인 복수 소속(겸직·출강·창업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식별·배제하지 못하는 구조의 평가시스템 개선 필요 (개선 1건)

5) 일상감사 처리 미이행

「위임전결규칙」 및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일상감사 절차를 미이행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 (주의 1건)

6) 3천만원 이상 외주용역비 변경기준 명확화 필요

외주용역비 계획 변경의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하여 공통 운영요령 등에 외주용역비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필요 (통보 1건)

7) 수요기업의 범위 및 역할 설정 미흡

수요기관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하여 공통 운영요령 등에 수요기관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필요 (통보 1건)

8) 연구개발사업 안전관리형 지정과제 선정평가 실효성 미흡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통 운영요령 등에 안전관리형 과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필요 (통보 1건)

9) 외부강의등 미신고

①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의 미신고와 월 3회를 초과한 관련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주의경고를 촉구 (주의경고 1건)

②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누락하여 미신고한 관련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촉구 (주의 1건)

③ 임직원 행동강령」의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전직원 대상으로 신고 대상 및 기준 안내 등 사전신고 의식 내재화를 위한 교육 강화 필요 (통보 1건)

【현지조치사항】

1) 양도·양수 협약변경 업무 부적정

양도·양수 관련 협약변경 업무 적정성 검토 결과,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인수합병 확인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한 22개 과제를 확인하여 보완 조치 (현지조치)

2) 중단(성실)·포기 과제에 대한 수행보고서 접수 업무 지연

‘중단(성실)’ 과제 중 수행보고서 미제출 6개 과제를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조치 (현지조치)

3) 외부강의등 미신고

외부강의 미신고 1건에 대하여 외부강의자가 외부강의 참석 전 사례금 미수령 의사를 표시하고 참석하였으나, 요청기관에서 착오로 사례금을 입금하여 해당 요청기관에 연락하여 입금된 사례금을 이체·반납 완료(2025.11.4.) (현지조치)

【모범사례】

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미납금에 대한 적극적 징수 추진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납금에 대한 세부 강제 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미납금을 징수

2) 바이오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적극 수행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BIO USA K-BIO 소부장 특별관' 운영을 통해 정부 R&D 우수성과를 세계 시장에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바이오 분야 R&D 성과 홍보·창출에 기여

3) 연구개발과제 안전관리 체계 정비

연구현장의 안전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연구기획 - 수행 - 종료 전 단계에 걸친 'R&D 안전관리 통합체계'를 정비하고 실행력 강화에 기여

4) 산업부 최초 “반도체분야 프로그램형 사업” 도입으로 기획·평가·관리 효율성 강화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반도체분야 프로그램형 사업 “최초” 도입으로 기획 시간·비용 절감 및 통합 지원 체계 등을 통한 기획·평가·관리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

5) R&D 성과확산을 위한 긴밀한 업무협력 체결 및 우수기업-해외 바이어간 매칭 성공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우리원과 K●●●●가 협력하여, “우수성과 발굴
→해외마케팅 지원→글로벌 바이어 매칭→수출계약”까지 원스톱 직행하여
R&D의 성과확산에 기여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지 적 사 항	순번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 구분	처분 요구일	조치 기한일	조치부서
양도·양수 협약변경 업무 부적정	1	○ 양도·양수 협약변경 업무가 관련 규정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평가원 과제 담당자 대상 사 업 관리 교육 실시 필요	통보	2025.12	2026. 2. (2개월)	◇◇◇◇실
중단(성실)·포 기 과제에 대한 수행보고서 접수 업무 지연	2	○ 수행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기획평가원 과제 담당자 대상 사 업 관리 교육 실시 필요	통보	2025.12	2026. 2. (2개월)	◇◇◇◇실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지정 및 관리 절차 개선	3	○ 안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여 지정하는 안전과제 사전검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하반기에 공고된 연구개발과제가 검토대상 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개선 필요	개선	2025.12	2026. 2. (2개월)	◇◇◇◇실
		○ 안전사고 처리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사업부서 및 연구개발기관에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 필요	권고	2025.12	2026. 2. (2개월)	◇◇◇◇실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 개선	4	○ 평가위원의 현재 진행 중인 복수 소속(겸직·출강·창업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식별·배제하지 못하는 구조의 평가시스템 개선 필요	개선	2025.12	2026. 2. (2개월)	▼▼▼▼실
일상감사 처리 미이행	5	○ 「위임전결규칙」 및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일상감사 절차를 미이행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	주의 (1명)	2025.12	2026. 2. (2개월)	-
3천만원 이상 외주용역비 변경기준 명확화 필요	6	○ 외주용역비 계획 변경의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하여 공동운영 요령 등에 외주용역비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필요	통보	2025.12	2026. 2. (2개월)	◇◇◇◇실
수요기업의 범위 및 역할 설정 미흡	7	○ 수요기관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하여 공 통운영요령 등에 수요기관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필요	통보	2025.12	2026. 2. (2개월)	◇◇◇◇실
연구개발사업 안전관리형 지정과제 선정평가 실효성 미흡	8	○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 운영요령 등에 안전관리형 과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필요	통보	2025.12	2026. 2. (2개월)	◇◇◇◇실
외부강의등 미신고	9	○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의 미신고와 월 3회를 초과한 관련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주의경고를 촉구	주의 경고 (1명)	2025.12	2026. 2. (2개월)	○○○○실

지 적 사 항	순번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 구분	처분 요구일	조치 기한일	조치부서
	10	○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누락하여 미신고한 관련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촉구	주의 (4명)	2025.12	2026. 2. (2개월)	-
	11	○ 「임직원 행동강령」의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전직원 대상으로 신고 대상 및 기준 안내 등 사전신고 의식 내재화를 위한 교육 강화 필요	통보	2025.12	2026. 2. (2개월)	☞☞☞☞실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지 적 사 항	순번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구분	조치부서
양도·양수 협약변경 업무 부적정	1	양도·양수 관련 협약변경 업무 적정성 검토 결과,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인수합병 확인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한 22개 과제를 확인하여 과제관리시스템(PMS)에 보완 조치	현지시정	◆◆◆◆실 등 9개 부서
중단(성실)·포기 과제에 대한 수행보고서 접수 업무 지연	2	‘중단(성실)’ 과제 중 수행보고서 미제출 6개 과제를 확인하여 과제관리시스템(PMS)에 보완 조치	현지시정	■ ■ ■ ■ ■ 실 등 3개 부서
외부강의등 미신고	3	외부강의 미신고 1건에 대하여 외부강의자가 외부강의 참석 전 사례금 미수령 의사를 표시하고 참석하였으나, 요청기관에서 착오로 사례금을 입금하여 해당 요청기관에 연락하여 입금된 사례금을 이체·반납 완료(2025.11.4.)	현지시정	-

3. 모범사례 일람표

제 목	순번	관계부서	성명	공적요약	기대효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미납금에 대한 적극적 징수 추진	1	●●●실	●●●●수석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납금에 대한 세부 강제 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미납금을 징수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 관리 강화
바이오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적극 수행	2	♠♠♠♠♠실	♠♠♠선임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바이오 분야 R&D 성과 홍보·창출에 기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 성과 창출 확대
연구개발과제 안전관리 체계 정비	3	▶▶▶▶실	▶▶▶전임	○연구현장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실행력 강화에 기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산업부 최초 “반도체분야 프로그램형 사업” 도입으로 기획·평가·관리 효율성 강화	4	◀◀◀◀◀실	◀◀◀선임	○반도체분야 프로그램형 사업 “최초” 도입으로 기획 시간·비용 절감 및 통합 지원 체계 등을 통한 기획·평가·관리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따른 기획·평가관리 역량 강화
R&D 성과확산을 위한 긴밀한 업무협력 체결 및 우수기업-해외 바이어간 매칭 성공	5	▼▼▼▼▼실	▽▽▽선임	○우리원과 K□□□□가 협력하여, “우수성과 발굴→해외마케팅 지원→글로벌 바이어 매칭→수출 계약”까지 원스톱 직행하여 R&D의 성과확산에 기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따른 성과 확산 역량 강화

V.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자	●●●, □□□□ (교차감사)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실), ○○○○○본부(●●●●●실, ◎◎◎◎◎실, ◇◇◇◇◇실), ◆◆◆◆◆본부(□□□□□실, ■■■■■■실), △△△△본부 (▲▲▲▲▲실, ▽▽▽▽▽▽▽실), ▼▼▼▼▼▼▼본부(◁◁◁◁◁실, ◀◀◀◀◀/◀◀실), ▷▷▷▷부원장(▶▶▶▶실)	처분요구일	2025.12.	회신 기한일	2026.02. (통보일로부터 2개월)

통 보 · 현지시정

제 목 양도·양수 협약변경 업무 부적정

관 계 부 서 ①☆☆☆☆본부(★★★★실)
 ②○○○○○○본부(●●●●●실, ◎◎◎◎◎실, ◇◇◇◇◇실)
 ③◆◆◆◆◆본부(□□□□□실, ■■■■■■실)
 ④△△△△본부 (▲▲▲▲▲실, ▽▽▽▽▽▽▽실)
 ⑤▼▼▼▼▼▼▼본부(◁◁◁◁◁실, ◀◀◀◀◀/◀◀실)

조 치 부 서 ▷▷▷▷부원장(▶▶▶▶실)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과제 수행 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변경승인 업무를 신청한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변경 신청의 타당성과 관련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표 1] 양도양수 관련 협약변경 제출서류 미비 과제

순번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소관부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I	
20				
21				
22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실에서는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과제담당부서를 대상으로 협약 변경 업무 등 사업관리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지조치 사항

참여기관 변경 관련 협약변경 서류 중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인수 합병 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한 22개 과제 담당자에게 감사의 종료전까지 과제관리시스템(PMS)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고, 해당 과제에서 서류 제출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지시정】

조치할 사항

♣♣♣♣부원장(♠♠♠♠실)은 과제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협약변경 업무 등 사업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2	감사자	△△△, ▲▲▲ (교차감사)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실), ○○○○○본부(●●●●●실), ◎ ◎◎◎◎◎본부(◇◇◇◇◇/◆ ◆실), □□□□부원장(■●●●■실)	처분요구일	2025.12.	회신 기한일	2026.02. (통보일로부터 2개월)

통 보 · 현 지 조 치

제 목 중단(성실)·포기 과제에 대한 수행보고서 접수 업무 지연

소 관 부 서 ① ☆☆☆☆☆본부(★★★★★실)

② ○○○○○본부 (●●●●●실)

③ ◎◎◎◎◎본부(◇◇◇◇◇/◆◆실)

조 치 부 서 □□□□부원장(■●●●■실)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2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중인 과제에 대해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하고, 제3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의거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2. 중단(성실) · 포기 과제에 대한 수행보고서 접수 업무 지연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3항에

의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통보를 받거나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포기에 대한 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성실)된 경우는 수행 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예비조사 기간 동안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원과제 중 '중단(성실)' 과제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 25개 중 수행 보고서 제출 대상 과제는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 과제 등 수행보고서 미제출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4개 과제를 제외한 21개로 확인되었다.

수행보고서 제출 대상 21개 과제에 대해 과제관리시스템(PMS)상 수행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15개 과제는 수행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

기술개발”

등 6개 과제는 45일이 경과함에도 미제출 됨을 확인하여 동 감사의 실지감사 기간 중 [표 1]과 같이 ▽▽▽▽▽실 등 과제 담당부서에 동 감사의 종료전 까지 과제관리시스템(PMS)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고 해당 과제에서 수행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지조치)

아울러, 향후 수행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평가관리원 과제 담당자 대상 사업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표 1] 현지조치를 통해 수행보고서가 제출된 중단(성실)·포기 과제

순번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소관부서
1				
2				
3				
4				
5				
6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실에서는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과제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 안내 등 사업 관리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원장(▼▼▼▼실)은 과제 담당부서 대상으로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 안내 등 사업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	감사자	○○○ ●●● (교차감사)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부원장 (◇◇◇◇실)	처분요구일	2025.12.	회신 기한일	2026.2. (통보일로부터 2개월)

개 선 · 권 고

제 목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지정 및 관리 절차 개선

소 관 부 서 ○○○○부원장(◇◇◇◇실)

조 치 부 서 ○○○○부원장(◇◇◇◇실)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 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연구개발 관련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계획(2020년 9월)’을 수립하고, 전주기 안전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안전관리형 과제¹⁾(이하 ‘안전과제’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안전과제 지정을 위한 i) 안전과제 사전검토²⁾, ii) 안전과제 심의 소위원회³⁾, iii) 안전 운영위원회⁴⁾ 등의 업무는 ◇◇◇◇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1) 안전관리형 과제 정의: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2) 안전관리형 과제 심의대상 분류 기준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 대상과제 분류(TRL 7이상, 시작품 제작 등)

3) 기술분과별 기술·안전전문가가 소위원회에서 안전관리/위험성 높은 과제 선발(2024년부터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2.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지정 및 관리 절차 개선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지진 등 재해요인 검토 포함), 기술적 위험성, 안전관리 기준, 정기점검·검사 필요성 등의 안전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요령 제21조제6항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과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제2항제13호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 및 안전사고의 내용, 발생원인, 사후조치 및 경과 보고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2025. 11. 6.~11. 13.) 동안 기획평가원에서 2020년 10월부터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안전과제(200개)⁵⁾ 지정 절차 및 연구개발과제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첫째, 안전과제 지정 절차를 점검한 결과, 연구개발과제 기획 단계에서 해당 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가 안전과제로 검토되었지만, [표 1]과 같이 기획평가원에서 지정·관리하는 안전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10건이 확인되었다.

4)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종합 심의,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확정

5) 안전과제 지정 현황: 2020년(14개), 2021년(47개), 2022년(41개), 2023년(24개), 2024년(74개)

한편, 안전과제를 최종 심의하는 안전 운영위원회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안전 과제로 검토된 지정공모/품목지정 과제는 기본적으로 안전과제로 지정하며, 기획 단계가 없는 자유공모형 과제의 안전과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표 1] 안전과제로 미지정된 연구개발과제(RFP 기준 안전과제)

사업년도	공고명	연구개발과제명	총 개발기간
2021년			2021.07.01.~ 2024.06.30.
2021년			2021.09.01.~ 2024.12.31.
2021년			2021.09.01.~ 2024.12.31.
2021년			2021.09.01.~ 2024.12.31.
2021년			2021.10.01.~ 2025.12.31.
2021년			2021.10.01.~ 2025.12.31.
2021년			2021.10.01.~ 2025.12.31.
2021년			2021.10.01.~ 2025.03.31.
2021년			2021.10.01.~ 2025.03.31.
2021년			2021.10.01.~ 2024.12.31

이에 따라 기획 단계에서 안전과제로 검토되었지만 안전과제로 지정되지 않은 [표 1]의 연구개발과제 10건은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 컨설팅 및 안전과제 위험성 평가 등을 위해 안전전문가와 함께 연구현장에서 진행되는 안전과제 진도점검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과제 지정을 위한 계획⁶⁾이 해당연도 9~10월경 수립됨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지원된 연구개발과제가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반기 공고되어 지원되는 연구개발과제(지정공모/품목지정, 자유공모)도 안전과제 검토대상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점검한 결과, 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기관에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의 내용, 발생원인 등을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해당 안내자료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관련 서식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원인 등이 포함된 연구사고 발생보고서 및 안전사고 현장조사표 작성, 유관기관 공유 및 보고, 안전사고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의 업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세부적인 이행 사항, 관련 서식이 포함된 ‘안전사고 발생 시 가이드라인’⁷⁾을 기획평가원 사업부서와 연구개발기관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실은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안전과제 지정·관리 및 안전과제의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6) ○○○○○팀-457(2020. 9. 22., “2020년도 산업기술 R&D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계획(안) 수립보고”)
○○○○○팀-466(2021. 10. 29., “2021년도 산업기술 R&D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계획(안) 보고”)
○○○○○팀-500(2023. 10. 11., “2023년도 산업기술 R&D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계획(안) 보고”)
○○○○○실-2472(2024. 11. 18., “2024년도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위원회 개최 계획(안) 보고”)

7) 안전사고 대응 절차: 사고발생 보고 → 사고조사 → 조사결과 후속조치 → 안전조치 이행점검
안전사고 관련 서식: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안전사고 현장조사표, 안전사고조치보고서

관련 업무를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원장(○○○○실장)은

- ① 연구개발과제 중 안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여 지정하는 안전과제 사전 검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하반기에 공고된 연구개발과제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 ② 연구개발과제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후조치 및 표준화된 업무처리를 위해 안전사고 처리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사업부서 및 연구개발기관에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일련번호	4	감사자	○○○, ◆◆◆ (준감사인), □□□ (교차감사)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실)	처분요구일	2025.12.	회신 기한일	2026.2. (통보일로부터 2개월)

개 선

제 목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 개선

소 관 부 서 ●●●●●본부(○○○○○실)

조 치 부 서 ●●●●●본부(○○○○○실)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산·학·연 기술 및 경제·시장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있다.

평가단에 속한 전문가들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척 및 회피 기준을 적용하여 ○○○○○실에서 전자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 개선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통상부는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통 운영요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평가대상과제의 연구개발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평가위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며, 공무수행사인 역시 공직자로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명시하는 사적 이해관계자 중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 재직 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기획평가원은 이를 기반으로 전자평가시스템⁸⁾을 통해 자동추천과 특별 추천 방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척·회피 기준을 전제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기획평가원은 전자평가시스템을 통해 기술분류(TEF, Technology Evaluator Fit), 주제어(KWS, Keyword Similarity) 매칭 기반 자동추천과 담당자 특별추천 방식을 병행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회피 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동 감사에서 전자평가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평가위원의 소속(겸직·출강·창업 등)과 최근 2년 내 경력 정보가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식별·관리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8) <https://stella.keit.re.kr>

특히, 평가위원이 대학·기업 등 복수 기관에 소속된 경우 해당기관이 평가대상 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등록되더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규정의 취지는 충족하였으나 실질적인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운영 단계에서 통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취약점이 실지감사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미흡은 i) 평가의 독립성 저하, ii)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약화, iii) 경쟁 과제 관련 정보의 불필요한 노출 가능성 등 여러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기관 평가 금지’ 기준이 시스템에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아 관련 법령 위반의 위험도 존재한다.

이는 자동 추천 알고리즘에서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의 ‘겸직 및 경력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실시간 제척 로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자평가시스템을 통한 공통 운영요령 제7조 제3항의 ‘동일기관 소속 전문가 제외’ 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평가위원 관리와 관련한 전자평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동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현행 전자평가시스템이 복수 소속 및 최근 경력정보를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자평가시스템 로직을 변경하여 제척 기준을 보

다 정밀하게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실장)은 평가위원의 ‘검직 및 경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동 제척 로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평가시스템을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일련번호	5	감사자	○○○, ●●● (준감사인)	공개(O),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1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R&D 기획·평가관리 전부서 (○○○○○○○실)	처분요구일	2025.12.	회신 기한일	2026.02. (통보일로부터 2개월)

주 의

제 목 일상감사 처리 미이행

소 관 부 서 R&D 기획·평가관리 전부서

조 치 부 서 ◇◇◇◇◇◇◇본부(○○○○○○○실)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근거 및 절차의 적정성, 예산 배정의 합목적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지침」에 명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상감사를 감사실에 의뢰하고 일상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를 반영 후 결재를 득하고 있다.

2. 일상감사 처리 미이행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기획평가원의 임직원은 일상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그 업무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및 심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로

「일상감사지침」 제8조9)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획평가원 「위임전결규칙」 내 [별표1]에는 단위업무별 전결권자와 일상감사 대상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며, 과제기획 기본계획과 신규평가 계획 수립 등은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본 특정감사의 예비조사기간 동안 '24.10.01.부터 '25.08.31.까지 기획평가원의 R&D 기획 및 평가관리 부서에서 기안된 문서 중 일상감사 대상인 과제기획 관련 17건, 신규평가 관련 54건,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관련 95건, 성과분석 관련 71건 등 총 237건에 대하여 일상감사 미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실에서 2025년 6월 9일에 기안 상신한 평가계획(안) 보고 1건이 일상감사 필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한 결과, 재공고에 따른 일상감사 불필요 대상으로 인지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일상감사 미이행 문서 현황

구분	문서번호(일자)	문서제목	일상감사 근거	소관부서	담당자
1	○○○○○○○실-2250(2025.06.09)	2025년도 □□□□□□□□ □□□□□ 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안) 보고	신규평가 (평가계획 수립)	○○○○○○○실	□□□

9) 일상감사지침 제8조(일상감사 의뢰) 제1항 및 제2항

① 집행부서의 장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의뢰서를 첨부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범위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공고 건이라 하더라도 평가대상이 달라지고, 평가받는 기관이 달라진다면 이는 별건의 행위로 보여져 일상감사 의뢰가 필요하다.

관계자 의견 및 검토결과

해당업무 담당자는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위임전결사항에 따른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임전결규칙」 및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일상감사 절차를 미이행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의】

[관련자] ◇◇◇◇◇◇◇본부(◎◎◎◎◎◎실) 4급 □□□

일련번호	6	감사자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부원장 (○○○○○실)	처분요구일	2025.12.	회신 기한일	2026.02. (통보일로부터 2개월)

통 보

제 목 3천만원 이상 외주용역비 변경기준 명확화 필요

소 관 부 서 ●●●●부원장(○○○○○실)

조 치 부 서 ●●●●부원장(○○○○○실)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 운영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
이상의 외주용역비의 경우 사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3천만원 이상 외주용역비 변경기준 명확화 필요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연구개발기관은 공통 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 제16호에 따라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용역비¹⁰⁾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는

10) 외주용역비 :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

경우, 변경사유와 함께 공문으로 R&D관리시스템(IRIS¹¹)을 통해 승인성 협약 변경을 요청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공통 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12) 제9호에 따라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인 연구시설·장비의 계획 변경은 환율변동 등 단순 금액의 20% 이내 증감되는 경우 제외 등 예외 사유를 명시하여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외주용역비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통 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6호를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 포함 3,000만원 이상인 외주 용역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만 명시하고 있어 변경의 범위에 대한 상세한 구분 또는 기준이 없어 연구수행기관 및 위탁정산 회계법인의 규정 해석상 혼선이 지속되고 있어, 외주용역비의 계획 변경 시 변경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규정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11) IRIS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12) 공통 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제11호에 따른 직접비 이월은 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 8. (생략)

9. 3,0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 이상인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달리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 장비구매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변경된 금액이 3,0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와 변경된 금액이 1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는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10. ~ 15. (생략)

16.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외주 용역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단,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실은 감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외주용역비에 대한 계획 변경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원장(○○○○○실)은 외주용역비 계획 변경의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하여 공통 운영요령 등에 외주용역비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7	감사자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부원장(◎◎◎◎실)	처분요구일	2025.12.	회신 기한일	2026.02. (통보일로부터 2개월)

통 보

제 목 수요기업의 범위 및 역할 설정 미흡

소 관 부 서 ●●●●부원장(◎◎◎◎실)

조 치 부 서 ●●●●부원장(◎◎◎◎실)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기술개발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품·기술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수요기업의 범위 및 역할 설정 미흡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기획평가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에 수요기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동 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에 따라 필요 시 수요기업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고 있다.

수요기업은 개발제품 및 기술의 성능평가·검증, 교육 및 인력채용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¹³⁾하고 있으며, 실제 과제수행 시 수요기업은 협약 단계에서 기술기준을 제시, 연구수행 중 실증과정에 참여, 최종평가 시 기술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수요기업의 정의가 기업에 한정되어 비영리기관 수요처의 반영이 곤란하고, 현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요기업의 역할은 연구개발 수행 도중 시장환경 변화나 기술요구 수정이 필요하다더라도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절차적 근거가 부재하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실효성 및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 범위의 확대와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개발내용 변경 의견을 수요기관이 제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처가 참여하는 등 수요기관의 정의 및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9의2호]

1. ~ 9. (생략)

9의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제1항 및 제2항]

① 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2. ~ 3. (생략)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실은 감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과제에 참여하는 수요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원장(○○○○○실)은 수요기관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하여 공통 운영요령 등에 수요기관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8	감사자	○○○	공개(O),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부원장(○○○○○실)	처분요구일	2025.12.	회신 기한일	2026.02. (통보일로부터 2개월)

통 보

제 목 연구개발사업 안전관리형 지정 과제 선정평가 실효성 미흡

소 관 부 서 ●●●●부원장(○○○○○실)

조 치 부 서 ●●●●부원장(○○○○○실)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 수행 관련 규정을 지난 2024.12.30.에 개정 한 이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안전관리형 과제'를 지정·관리 중이며, 기획 및 평가 관리의 각 단계별 안전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2. 연구개발사업 안전관리형 지정 과제 선정평가 실효성 미흡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기획평가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1조(선정평가) 제3항 제9호에 선정평가 시 안전관리형 과제는 별도로 사업기간 내 안전성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안전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을 기술성 평가 시 함께 평가¹⁴⁾ 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안전관리형 지정과제가 최근 1.8배 증가('23년 41개 → '24년 74개)에도 불구하고 선정평가에서는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구성 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안전관리 전문가의 평가 참여 근거가 미비하며, 수행단계에서 장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 또한 부재한 사실이 동 감사기간 중에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전문가가 평가과정에 참여하고,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실제 장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실은 감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안전관리형 과제의

1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1조(선정평가)

① ~ ② 생략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 8. 생략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

10. ~ 14. 생략

④ ~ ⑤ 생략

⑥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과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 ⑫ 생략

평가절차 보완을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원장(○○○○실)은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통 운영요령 등에 안전관리형 과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9	감사자	○○○, ●●● (교차감사)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5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전부서 (○○○○실, ◇◇◇◇실)	처분요구일	2025.12	회신 기한일	2026.02 (통보일로부터 2개월)

주의 경고 · 주의 · 통보 · 현지시정

제 목 외부강의등 미신고

관 련 부 서 전부서

조 치 부 서 ◆◆◆◆부원장(○○○○실, ◇◇◇◇실)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임직원이 외부로부터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외부강의등 미신고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기획평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평가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36조15)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위해서는 요청자(기관)의 공문과 직무관련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 및 차상위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20.07.01.부터 2025.06.30.까지 산업통상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에서 기획평가원 임직원에게 지급한 외부강의료 지급내역 중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확인필요 현황 775건을 □□□□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신¹⁶⁾하여 확인한 결과, 퇴사에 따른 확인 제외대상 210건 외 565건 중 신고를 누락하여 미신고된 것이 총 12건(6명)이었다.

1) 신고 누락 및 해당 월 3회 초과

외부강의등 신고를 누락한 총 2건(1명) 중 신고 누락과 함께 해당 월 3회를 초과한 경우가 1건이었으며, 누락 사유는 업무일정 등으로 단순

15) 제3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요청자의 공문과 별지 제12호 및 제27호서식을 첨부하여 사전에 소속 차상위 부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중략 >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대학을 제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6) □□□□부 감사담당관-XX(2025.10.23., 공공기관 외부강의 실태 감사 협조 요청(2차))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표 1] 외부강의등 신고 누락 및 해당 월 3회 초과 사례

구분	성명	직급	소속부서	외부강의일	요청기관	신고 여부 등
1	△△△	PD	▲▲▲▲▲▲실	2021.02.01	한국산업기술소소원	신고
				2021.02.04	한국산업기술소소원	신고
				2021.02.25	KO소소소소 소소연구원	신고
				2021.02.26	한국산업기술소소원	미신고, 월 3회 초과
				2024.12.31	한국산업기술소소원	미신고

2) 신고 누락

외부강의등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총 9건(4명)으로 누락 사유를 확인한 결과 업무일정 등으로 단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명 모두 신고 누락에 따른 해당 월 3회 초과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표 2]

[표 2] 외부강의등 신고 누락 사례

구분	성명	직급	소속부서	외부강의일	요청기관	신고 여부
1	♣♣♣	PD	○○○○○실	2023.03.15	한국산업기술소소원	미신고
				2025.04.01	한국산업기술소소원	미신고
2	◆◆◆	PD	▣▣▣▣실	2021.02.23	한국산업기술소소원	미신고
				2022.10.13	한국산업기술소소원	미신고
3	●●●	실장	●●●●실	2023.12.05	한국소소소소공단	미신고
4	○○○○	수석	◇◇◇◇◇센터	2021.03.12	한국산업기술소소원	미신고
				2021.09.03	한국산업기술소소원	미신고
				2022.03.04	한국산업기술소소원	미신고
				2023.04.26	한국산업기술소소원	미신고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실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대상 안내 및 신고 횟수 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지조치 사항

외부강의 신고 여부 확인필요 대상 565건 중 1건(□□□□□□□□실 ♣♣♣ PD)은 외부강의 참석 전 사례금 미수령 의사를 표시하고 참석하였으나, 요청기관에서 착오로 사례금을 입금하였다. 이에 외부강의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 해당 요청기관에 연락하여 확인 후 입금된 사례금을 이체 및 반납(2025.11.4.)하는 현지 조치를 완료하였다. 【현지조치】

조치할 사항

① ●●●●부원장(○○○○실장)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의 미신고와 월 3회를 초과한 관련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주의경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경고】

[관련자] △△△△본부(▲▲▲▲▲▲실) PD ▽▽▽

②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누락하여 미신고한 관련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의】

[관련자]	△△△△본부(♠♠♠♠♠실)	PD	□□□
[관련자]	△△△△본부(♣♣♣♣♣♣♣실)	PD	♠♠♠
[관련자]	♣♣♣♣본부(♣♣♣♣실)	실장	○○○
[관련자]	○○○○본부(◆◆◆◆◆◆센터)	2급	◆◆◆

③ ♣♣♣♣본부(◇◇◇◇실장)는 「임직원 행동강령」의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전직원 대상으로 신고 대상 및 기준 안내 등 사전신고 의식 내재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VI. 감사결과 모범사례

일련번호	10	감사자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실)	처분요구일	2025.12.	회신 기한일	-

모범사례

제 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미납금에
대한 적극적 징수 추진

소 관 부 서 ●●●●본부(◎◎실)

조 치 부 서 ●●●●본부(◎◎실)

내 용

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원한 과제에 경우 사안에 따라 기술료·회수금¹⁷⁾, 환수금·제재부가금¹⁸⁾ 등을 징수하고 있다.

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을 통보받은 납부 대상 기관(자)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 등 대외적으로 징수율 저조에 관한 우려 및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징수율

17)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R&D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기술료', 과제 수행 후 지원 연구비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잔액을 R&D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회수금(舊 정산금)'이라 함

18)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연구비 부정사용 및 평가결과 불성실 실패 과제에 대해 관련 금액을 R&D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환수금'이라 하며 관련하여 제재 처분을 통하여 추가 금액을 부과하여 국고로 납입하는 것을 '제재부가금'이라 함

제고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실 ◆◆◆ 수석은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납기관(자)에 대한 은행 계좌 압류 후 강제 추심,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세부 강제 징수 절차를 마련¹⁹⁾하고 강제 징수 관련 규정 검토 및 발생 가능 민원(행정심판 등 관련소송 포함)에 대한 사전조치를 위해 정부 기관, 금융기관, 법무법인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였다.

또한, 강제 징수 과정에서 미납기관(혹은 개인)의 이의신청·소송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접근 가능한 채납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연락처를 입수하고, 전화/이메일 안내를 직접 실시 하는 등 적극적 소통 이후 징수 업무를 추진하였고, 미납 금액의 일부를 선납²⁰⁾ 하게 하고 납부 여력²¹⁾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적극 승인하는 등 징수액 제고 및 납부 저항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근 5년간 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미납금에 대한 강제징수(추심) 사례가 없었으나, 2025년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을 통해 15.6억원(88건)을 회수하여 국고납입 조치 하는 등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19) ①대상자 선별 → ②강제집행 예고 안내(내용증명 발송) 및 당사자 전화 안내(병행실시) → ③강제집행 예고 문서 미수령자에 대한 재발송 → ④분할납부 검토(필요시) → ⑤은행계좌 압류 등 강제 추심 → ⑥ 납부완료 건에 대한 국고납입

20) 미납금액의 10%이상을 선납토록하여, 일부금액 징수와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간 연장하는 효과 발생

21) 재무여건, 매출 및 미수금 등 납부가능성, 분할납부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할 사항

○○○○본부(◇◇실)은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납금에 대한 세부 강제 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미납금을 징수한 관련자에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관련자] ○○○○본부(◇◇실)

2급(수석)



종합감사(R&D사업) 모범사례1

순번	소 속	직 급	성 명
1	○○실	2급(수석)	◇◇◇◇
제목 : 기술료, 환수금 등 미납금에 대한 적극적 징수 추진			
추 천 내 용			
□ 추진배경 ○ (추진근거) 산업통상부 연구개발지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과제별 사안에 따라 기술료·회수금·환수금·제재부가금 등을 징수하고 있음 * (기술료·회수금) R&D 과제종료 후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 권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수행과제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정산잔액의 정부출연비에 해당하는 금액(정산금)을 전문기관이 회수하여 국고납입 * (환수금·제재부가금) R&D 과제 수행중 연구비 부정사용, 불성실 실패 과제 등 문제과제에 대하여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실시하고 해당금액을 환수하여 국고납입 ○ (징수관리) 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을 통보받은 납부 대상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징수를 저조에 관한 우려 및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징수율 향상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추진내용 ○ (문제인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국연법/산촉법 등)의 경우 미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하고, 실무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절차(매뉴얼) 등은 부재 * 우리원은 미납에 따른 재산압류(은행계좌 등)는 시행했으나, 회수를 위한 강제추심은 미추진 ○ (대상선정) 기관설립 이후 체납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징수대상 선정 - 제재처분 후 법적조치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미납인 건, '21년 이전에 제재부가금 고지서 발행* 후 미납기관 및 개인 체납자 조사 * 전문기관(KEIT/KI■■■/KE▽▽▽) 구분없이 해당과제의 전체를 대상으로 납부고지서별 징수 담당 전문기관 분류 및 징수액 확인을 선행('14년~'21년 제재처분건) - 신용조사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징수의 실익 검토(사망, 청산 등 실익없음) ○ (절차정립) ①대상자 선별 → ②강제집행 예고 안내(내용증명 발송) 및 당사자 전화 안내(병행실시) → ③강제집행 예고 문서 미수령자에 대한 재발송 → ④분할납부 검토(필요시) → ⑤은행계좌 압류 후 강제추심 → ⑥납부완료 건에 대한 국고납입 ※ 강제집행 예고, 당사자 전화 안내/독촉, 분할납부, 강제추심 등의 업무는 기존에 미실시된 업무이며, 징수율 향상 및 민원최소화를 위하여 신규로 실시한 업무절차임			

- **(의견수렴)** 강제징수 관련 규정 검토 및 발생가능 민원(행정심판 등 관련 소송 포함)에 대한 사전조치를 위해 정부기관,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협의기관			주요 의견수렴 및 협의내용
정부기관	산업부	▼▼과	(방향정립) 산업기술 R&D 제재부가금 전체 미납현황,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추진근거 및 추진방안 등 논의
		♠♠♠과	(징수현황) 미납금에 대한 '25년 상반기 강제징수 및 미납현황, 국고납입 조치 및 개선방안 논의
	국세청(○○세무서)		(벤치마킹)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 등 국세청의 징수 노하우 및 국세청 징수 체계 청취, 관련법령 및 처리기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추심 등 서식 입수
민간	금융권	○○○○○○○○	(벤치마킹) 미납 대상(개인/기관)별 은행계좌압류 및 강제추심을 위한 업무 협력 실무내용 청취, 강제징수 실무 매뉴얼 입수
		●●●●●	(벤치마킹) 시중은행의 계좌압류 및 징수요청 시 처리절차, 추심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예금을 상환하는 기준 및 사례 공유
	법무법인	◇◇ ☞	(법률검토) 강제징수를 위한 국연법·산촉법·공동운영요령·개인정보보호법·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채권추심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처리방안 검토(수시)

- **(적극행정)** 미납기관(혹은 개인)의 이의신청·소송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실시하고, 필요시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징수
- **(소통강화)** 접근가능한 체납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연락처를 입수하고, 전화/이메일 안내 등 적극적 소통 이후 후 강제징수 추진

* 과제관리시스템, NTIS, 은행계좌 업무시 사용시 미납대상자가 등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선/온라인 안내를 직접 실시한 후 강제징수 절차 개시

- **(분할납부)** 미납금액의 일부를 선납*하고, 납부여력**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적극 승인하는 등 징수액 제고 및 납부저항을 최소화

* 미납금액의 10%이상을 선납토록하여, 일부금액 징수와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간 연장하는 효과 발생

** 재무여건, 매출 및 미수금 등 납부가능성, 분할납부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징수실적)** 미납금에 대한 KEIT직접추심을 통해 15억6천만원을 징수*

- 환수금·제재부가금 징수액 1,445백만원, 기술료·회수금 징수액 114백만원

* ('09년~'24년) 채권추심 건수/회수 금액 : 0건/0원

□ 기대효과

- **(재정증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 공공재정의 환수대상을 적극 회수하고 국고납입 조치하여 정부의 재정건정성 확보에 기여

*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등 문제과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회수대상액을 적극 회수

- **(운영개선)** R&D과제에서 발생하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법적절차에 의거하여 회수하고, R&D 평가관리 및 운영 개선*에 기여

* 채권추심위임기관(법무법인)의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만 존재, KEIT◆◆실은 국세청/민간기관(은행)에 시스템에 연계가능한 'KEIT 강제징수 세부 절차'를 마련

일련번호	11	감사자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실)	처분요구일	2025. 12.	회신 기한일	-

모 범 사 례

제 목 바이오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적극 수행

소 관 부 서 ●●●●●●●●본부(○○○○○실)

조 치 부 서 ●●●●●●●●본부(○○○○○실)

내 용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사업에 대한 과제기획·및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획평가원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이라 한다)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등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실 ◇◇◇◇ 선임은 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하여 발생한 우수 R&D 성과에 대한 글로벌 진출 플랫폼 필요성을 인지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전시회인 'BIO USA'를 통해 R&D 성과 홍보 및 수요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간 협력을 위한 'K-BIO 소부장 특별관'을 기획·운영하였다.

특히 ◇◇◇ 선임은 기획평가원에서 최초 운영한 ‘2024년 소부장 특별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한국관 내 소부장 전용 특별관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국내 바이오 기업의 해외진출 및 네트워킹 강화를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2025년 ‘BIO USA K-BIO 소부장 특별관’에 참여한 전시기업의 비즈니스 미팅 건수가 대폭 증가(2024년 207건 → 2025년 342건, 65% 증가)하였고, 다수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장비 제조사, 유통사, 투자기관 간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기업은 미국 현지 납품, 샘플 테스트 및 제품검증 추진, OEM 생산 논의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와 같이 ◇◇◇ 선임은 ‘BIO USA K-BIO 소부장 특별관’ 운영을 통해 정부 R&D 우수성과를 세계 시장에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신규 수요처 확보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실장)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바이오 부문 R&D 성과 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한 관련자에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관련자] ●●●●●●●●본부(○○○○○실) 4급(선임) ◇◇◇

종합감사(R&D사업) 모범사례2

순번	소 속	직 급	성 명
2	○○○○○○○실	4급(선임)	◇◇◇◇
바이오 USA 소부장 특별관 운영을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한 적극적 업무 수행			
추 천 내 용			
□ (추진배경) 바이오 의약품 소부장 글로벌 시장 확대 및 전략적 중요성 증가에 따라 국내 바이오 소부장 관련 R&D 지원 확대 추진을 통해 성과 도출 중 ○ KEIT는 '19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0년부터 바이오·소부장 R&D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년부터 '28년까지 총 1,528억원(국비) 지원 중 ○ 그간 국내 바이오·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형 R&D 지원 및 상호검증 체계 구축 등을 통해 R&D 결과물을 활용한 계약 체결 및 생산공장 설립 등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 중 ○ 그러나 국내 바이오 중소기업은 R&D 통한 성과 도출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 - 정부 R&D를 통해 확보한 원천기술 및 제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K-바이오 및 글로벌 파트너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필요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지도 향상을 위한 K-BIO 바이오·소부장 특별관 운영 추진 □ (주요내용) 세계 최대규모 바이오 전시회 'BIO USA 2025*'의 KOREA 소부장 특별관을 통해 바이오·소부장 R&D 성과홍보 및 네트워킹 강화 * (BIO USA 2025) 미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국제 컨벤션으로 70개국 1,500개 이상 기업 전시, 약 20,000명이상 방문하는 국제 바이오제약 전시회 - 일자 및 장소 : 2025. 6. 16.(월)~6. 19.(목) / 미국 보스턴 ○ (소부장 특별관 운영)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소부장 기업을 선정하여 '24년 최초 'K-BIO 소부장 특별관' KEIT 단독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25년에는 한국관 내 'K-BIO 소부장 특별관'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네트워킹 강화			

< '25년 소부장 특별관 전시기업 목록>

회사명	주요품목
△△△△공업㈜	· 초산소다, 빙초산, 아세트니트릴&이소프로필알콜70%
▲▲▲▲디지털	· 일회용 세포배양기, 일회용세포배양백
(주)셀▽▽▽	· 마이코플라즈마 진단·제거·예방용 시약, 바이러스 검출시약 등
(주)에▼▼▼	· 바이러스 제거용 분리막
(주)제○○○	· CO2 세포 배양기
아●●●(주)	· 세포 배양용 배지, 분리정제용 레진

- (주요성과) '25년 약 342건('24년 207건) 미팅 실시, 기술 문의, 신규고객 미팅 및 제품입고 협의 등 해외 수요처 확보 및 납품 성과 발생

회사명	성과 내용
△△△△공업㈜	· 해외 대리점 계약 상담 추진, 전시회를 통해 관계자 미팅 성사 · 자사 미국 대리점 Birch를 통해 캄브릿지 및 MIT에 납품 완료
(주)에▼▼▼	· 제약·바이오기업 및 장비 제조사와 공급 및 공동개발 협력 논의 · 주요 파트너사로부터 샘플 테스트 요청 및 제품검증 절차 협의
(주)셀▽▽▽	· 마이크로플라즈마 관련 구매 상담, 중국 내 제품 유통 문의 등
아●●●(주)	· 배지 및 레진 관련 장기공급, 파트너십, OEM 생산 등 논의 등

-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 생태계 동향 파악, 네트워킹/파트너십 기회 제공, 현지 클러스터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부대행사* 개최

* (부대행사)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 입주기관인 랩센트럴(Lab Central) 방문, KBTP (Korea Bio-Tech Partnership) 개최, 바이오 소부장기업-현지VC 세미나 개최 등

- 참가기업 (주)제◆◆◆-현지기관(Lab central) 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25.10월), 미국 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등과 협업 기회 확대 예정

< BIO USA 2025 소부장 특별관 >



- (기대효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발생한 R&D 성과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홍보를 통해 'K-BIO 소부장' 기술 신뢰도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

- R&D 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해외 진출까지 바이오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및 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경쟁력 강화

일련번호	12	감사자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부원장 (○○○○실)	처분요구일	2025.12.	회신 기한일	-

모 범 사 례

제 목 연구개발과제 안전관리 체계 정비

관 계 부 서 ●●●●부원장(○○○○실)

조 치 부 서 ●●●●부원장(○○○○실)

내 용

산업기술 R&D 과제의 대형화·복합화로 인해 연구현장의 안전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연구실 안전사고('21년 291건 → '23년 394건) 발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고도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대규모·고위험 실증형 과제가 지속 확대되면서 연구현장의 잠재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과 관리 공백도 누적되고 있었다.

이에 ○○○○실 ◇◇◇ 전임은 연구현장의 안전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연구기획 - 수행 - 종료 전 단계에 걸친 'R&D 안전관리 통합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개선을 추진하여 산업기술 R&D 안전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

① 안전사고 '표준 대응 프로세스' 구축

기존에는 안전사고 보고 규정만 존재하여, 사고 발생 시 기관·담당자 대응 절차가 상이하고 후속조치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었으나, 사고 단계별 절차(초기신고→원인분석→재발방지 대책)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행기관 간 동일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표준 프로세스 및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응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② 과제별 ‘안전조치 현황 점검서식’ 고도화

기존 서식은 ‘O/X’로만 이행 여부를 표시해 실질적 안전수준 파악이 어렵고, 현장의 위험요소 파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항목별 이행 수준·구체적 조치내역·예시문이 포함된 정비된 점검 서식을 개발하여 수행기관이 실제 안전관리 실행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보고서의 형식적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고, 기관별 안전수준 편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③ 사고 예방 중심의 ‘현장 중심 점검체계’ 보완

모든 안전관리 대상 과제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 부담이 크고, 위험성이 높은 과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제 위험도·특성 기반의 점검대상 선정 방식을 도입하고 비대상 과제는 서면점검 병행, 고위험 과제는 현장 중심 점검 강화로 체계를 재설계하였다. 또한 ○○○○○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9개 점검분야별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신속·일관된 안전사고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완비하여 사고 대응역량 강화, 이행수준 중심의 서식 개선으로 실질적 안전
관리 촉진하여 연구기관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 향상, 잠재 위험요인 선제
관리 및 안전관리형 과제 운영 효율성 증대를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몰입도를 제고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원장(○○○○실장)은 연구현장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실행력
강화에 기여한 관련자에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관련자] ○○○○실

5급(전임)

◇◇◇

종합감사(R&D사업) 모범사례3

순번	소 속	직 급	성 명
3	○○○○○실	5급(전임)	◇◇◇◇
연구개발과제 안전관리 체계 정비			
추 천 내 용			
□ (추진배경) 산업기술 R&D 과제의 대형화 및 복합화로 연구현장의 안전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R&D 안전관리 체계 정비 필요 ○ R&D 과제 관련 안전사고* 발생 이후 과제 기획부터 종료 이후까지 연구자 안전을 고려한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 * 포항 지열발전소 관련 지진발생('17.11월), 강릉TP 수소폭발('19.4월) - (과제 기획)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획 과제의 안전성을 정밀 검토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과제 사전 발굴 - (과제 수행) 과제 신청 시 과제 관련 안전조치 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획 대비 이행 현황을 현장점검·컨설팅을 통해 지속 관리 *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위험성 평가, 점검 계획 등 강화된 조치 요구 ○ 한편, 연구 환경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 법적 의무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 * 연구실 안전사고 : '21년 291건 → '22년 327건 → '23년 394건 → '24년 388건 ○ 또한 연구개발 관리 측면에서도 대규모·고위험 실증형 과제의 확대에 따라 연구 현장의 안전 위험 요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리 공백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 안전사고는 연구자 개인의 안전을 넘어 과제의 연속성 저해, 연구 몰입도 저하 등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체계 정비 및 고도화가 필수적 □ (주요내용) 안전사고 표준 대응 프로세스 구축과 현장 중심 점검체계 고도화를 통해 산업기술 R&D 안전관리 실행력 및 효율성 강화 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대응 프로세스 구축 - 안전사고 보고 규정*은 있으나, 세부 절차 및 후속 대응체계 미비 * 연구책임자는 안전사고의 즉각적 조치와 보고(내용·원인·경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절차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행기관 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표준 프로세스 및 매뉴얼 마련

* 초기 신고(발생 즉시) → 원인 분석(14일 이내) →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30일 이내)

- 마련된 프로세스와 매뉴얼은 안전과제 수행기관 안내자료에 반영 예정

② 자율적 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조치 현황 점검서식 고도화

- 산업기술 R&D 과제 수행기관은 안전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를 단계·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이미 운영 중

- 다만 기존 이행 현황 보고 서식은 각 항목의 이행 여부를 'O/X'로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이행 수준 파악에 한계

-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과제에 적용되는 점검보고서를 각 항목별 이행 수준, 구체적 조치 내역 등이 포함하는 형태로 개선

* 항목별 상세 작성 예시를 포함한 안내자료 제공을 통해 연구기관이 점검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도록 지원하고, 형식적 미비로 인한 불이익 예방

③ 사고 예방 중심 연구기관 안전관리 점검 체계 보완

- 기존에는 매년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한 위험성 평가표를 활용하여 현장점검 실시

- 그러나 부처 및 안전관리 전문 기관의 점검과 중복되는 연례 점검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위험성 평가표 단일 활용은 평가자 간 편차로 잠재적 위험 관리가 미흡하는 등 제도적 한계 존재

- 이에 따라 위험도와 과제 특성을 고려해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 외 과제는 보고서 서면점검 병행 운영으로 점검체계 보완

- 또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점검 과정에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 화학산업실과 연계하여 9개의 점검분야(관리체계, 일반 등) 별 세부점검 항목 구체화

□ (추진 기대효과) 연구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 제고와 자율성 확대를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몰입도 제고

- 사고 대응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전관리형 과제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과제의 안정적 수행 및 연구 몰입도 제고 기대

일련번호	13	감사자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실)	처분요구일	2025.12.	회신 기한일	-

모 범 사 례

제 목 산업부 최초 사업 도입에 따른 기획·평가·관리 효율성 강화

관 계 부 서 ●●●●●본부(○○○○○○○실)

조 치 부 서 ●●●●●본부(○○○○○○○실)

내 용

그간 반도체 분야 산업부 R&D는 소규모·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되고, 변동성이 극심한 반도체산업의 대내·외 이슈를 적기에 대응이 불가하였다.

특히 매 사안마다 신규사업 기획에 장시간 및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급변하는 환경에 즉각적·시의성 있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실 ◇◇◇ 선임은 반도체산업의 대외환경 리스크에 유동적·시의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전략을 적시에 담아낼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위하여 반도체분야 프로그램형 사업 “최초” 도입으로 기획 시간 및 비용 절감과 통합 지원 체계 정비 등 파편화된 12개의 소규모 R&D(국비 300억원 미만)를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재기획하여, 사업 기획·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비용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① 기획 효율

기존의 신규사업 기획에서 착수까지 약 2년 내외 및 추가적인 비용

(일반적인 용역 3천만원 이상)이 소요(예타는 그 이상 소요) 되는 것을 이슈 발생 시 바로 그해의 예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② 평가관리 효율

반도체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집중 평가·관리 지원 체계 마련으로 R&D 방향성 및 이슈 대응과 위험 요소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반도체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반도체산업에 특화된 과제 성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R&D 관련 효율성 강화를 통하여 사업 기획에 투입되는 시간, 비용 절감 등 업무 효율화를 높이고, 반도체분야 정책과 대내외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신속한 R&D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실장)은 기획 및 평가관리의 효율성 강화에 기여한 관련자에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관련자] ○○○○○실

4급(선임)

◇◇◇

종합감사(R&D사업) 모범사례4

순번	소 속	직 급	성 명
4	○○○○○○실	4급(선임)	◇◇◇◇
제목: 산업부 최초 “반도체분야 프로그램형 사업” 도입으로 기획·평가·관리 효율성 강화			
추 천 내 용			
□ (추진배경) 반도체산업의 대외환경 리스크에 유동적·시의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전략을 적시에 담아낼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 절실			
○ (현황) 그간 반도체 분야 산업부 R&D는 소규모·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			
[표1] <산업부 초격차 분야별 사업 추진 현황 (계속사업 부재 분야) (2024년 기준)>			
초격차 분야		세부사업 수	계속사업 보유분야
반도체		11개	미래모빌리티(자동차, 조선), 핵심소재, 지능형 로봇, 첨단제조, 첨단바이오 등 7개 분야
차세대 원자력		9개	
이차전지		7개	
디스플레이		2개	
항공방산		4개	
○ (문제점) 변동성이 극심한 반도체산업의 대내·외 이슈 적기 대응 불가			
- 소규모·단기 프로젝트는 특정 기술 확보 및 집중 지원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나, 반도체산업 전반의 다양한 이슈와 변동성*을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지원 품목 변경, 시의성 있는 정책 반영 등이 불가하므로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 봉착			
* 반도체 산업기술 및 사용주기 사이클이 4년에서 1년으로 급격히 단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심화되는 반도체 패권 경쟁 및 AI 경쟁 심화 등			
- 매 사안마다 신규사업 기획에 장시간 및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급변하는 환경에 즉각적·시의성 있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구조			
* 반도체 이슈(산업, 기술, 정책 등) 발생 ⇒ 사업기획(통상 6개월 내외) ⇒ 예산 심의(6개월 내외) ⇒ 신규사업 착수(차년도 4월)로 기획부터 착수까지 약 2년 내외 소요, 예타 규모의 사업은 그 이상의 기간과 비용이 필요			
☞ 그간 부재했던 반도체분야 유일한 프로그램형 계속사업 마련으로 반도체산업 대내외 변동성에 신속하고 유연한 기술개발 대응 지원 긴요			
□ (추진내용/추진성과) 반도체분야 프로그램형 사업 “최초” 도입으로 기획 시간·비용 절감 및 통합 지원 체계 등을 통한 기획·평가·관리 효율성 확보			
○ (추진경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개편방안 발표(과기부)(‘24.1월) → 예타 대상 선정(과기부)(‘24.4월) → 파편화된 R&D 통합·재기획 사업(반도체 △△△△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예타 신청 제출(∼‘24.9월) → 부처 대면회의 및 본예타 대상 선정(과기부)(∼‘24.12월) → 본예타 1~4차자문회의(∼‘25.5월) → 총괄위원회(6월) 및 확정통보(7월)(∼‘25.6월) → 과제 기획(∼‘25.12월)			

- (주요내용/성과) 파편화된 12개의 소규모 R&D(국비 300억원 미만)를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재기획하여, 사업 기획·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비용 효율화[표2]*

- ① **기획 효율** 반도체 이슈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신속 과제 지원 가능
 - * (기존) 신규사업 기획에서 착수까지 약 2년 내외 및 추가적인 비용(일반적인 용역 3천만원 이상) 소요(예타는 그 이상 소요) → (변경) 이슈 발생시 바로 그해의 예산으로 대응가능
- ② **평가 관리 효율** 반도체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집중 평가·관리 지원 체계 마련 → R&D 방향성 및 이슈 대응, 위험 요소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반도체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한 반도체산업에 특화된 과제 성과 극대화[참고]

[표2] < 변경 사항 >

구분		기존	변경
사업 구조	세부	6개 세부사업	1개 세부사업 “반도체 △△△△기술개발”
	내역	12개 내역사업	2개 내역사업 “▲▲▲반도체기술개발”, “반도체▼▼▼▼기술개발”
회계		5개 일반, 7개 소특	일반회계로 단일화 평가 관리 효율
기획		시간, 비용 소요	시간, 비용 절감 기획 효율
평가관리		파편화된 사업 평가관리	일률적인 사업 평가관리 추진 평가 관리 효율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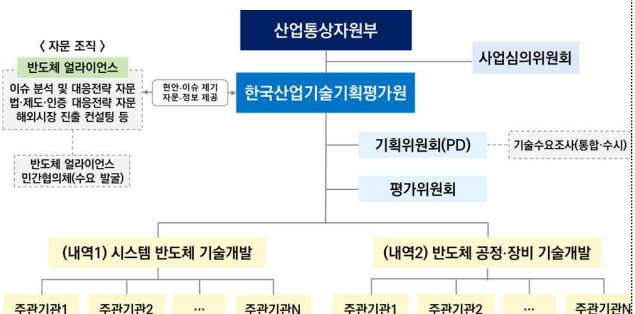
- (사업개요) 반도체△△△△기술개발사업(세부사업명)

- (기간/총사업비) 2026~계속/3,134.7억(‘26~’30년 5년 기준, 국비2,351억원)

- (목적) 부처 고유임무형 프로그램형 계속사업으로, 반도체 첨단산업 국가 전략 이행 및 생태계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경쟁력 제고

- (주요 내용)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공정·장비

- (반도체얼라이언스)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분석, 관련 규제 분석 및 대응, 필수 규격인증 획득 등 전문 자문 제공



<반도체△△△△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사업 기획에 투여되는 시간, 비용 절감 등 업무 효율화를 통해, 반도체분야 정책, 대내외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한 신속 R&D 지원 가능

□ (향후계획) 반도체분야 공백 영역 효율 지원을 통한 집중 성과 도출 예정

- (기대효과) 반도체산업 대내외 변화에 맞는 중점 예산 투자 영역, 글로벌 수준 기술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기술개발 투자 가능
- (향후계획)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과제 지속 지원 및 성과 관리
 - 과제기획(~’25.12월) → 신규과제 과제 착수(’26.4월~) → 평가관리(계속)
 - 기존 사업 대비 높은 성과목표 설정으로 R&D 성과 도출 효율성 제고
 - * 기존 대상사업의 사업화 매출액(정부 지원 10억 원당)은 평균 2.04억원 수준으로 동 통합재기획 사업은 10억원당 사업화 매출액 목표를 3.04억원으로 설정하여 매출 효율성 성과를 약 50% 제고

일련번호	14	감사자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실)	처분요구일	2025.12.	회신 기한일	-

모 범 사 례

제 목 적극행정을 통한 우수 R&D 성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역할 확장

관 계 부 서 ●●●●●본부(○○○○○○○실)

조 치 부 서 ●●●●●본부(○○○○○○○실)

내 용

국가 R&D에 매년 수조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개발기술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어 ‘종이 위의 성과’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KO◆◆◆는 전 세계 129개 무역관을 통해 매년 10만 건 이상의 수출 상담을 주선하고 있으나, 국내 우수한 기업에 정보 부족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우리원은 2025년 R&D 지원 과제 기반 우수성과 200선을 발굴하였으며, 다수의 기업·기관에서 해외 바이어 연결 어려움으로 기술의 상용화 지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실 ◆◆◆ 전임은 우리원에서 지원하는 우수성과 수행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이라는 단계별로 빈틈없는 R&D 성과의 발굴 및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였다.

우리원과 KO◆◆◆ 간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성과 발굴 → 해외마케팅 지원 → 글로벌 바이어 매칭 → 수출계약”까지 원스톱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K-테크 수출역량 지원을 꽃피우는데 기여하였다.

① 2025 KEIT 우수성과 200선 발굴을 위한 정량 상위 1% 성과 도출 및
언론 빅데이터 활용

성과조사 결과인 매출(수출, 내수), 특허(출원, 등록, 삼극특허), 추가 투자, 신규 고용 등 각 정량성과 지표별 상위 1% 성과 창출과제를 선별하고, 과제의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성적 성과 반영을 위해 언론 데이터 기반 임팩트 성과(기업성과)를 과제별 등급으로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제재 처분, 문제 과제 등 부적합 과제 제외 후 2025 KEIT R&D 우수성과 200선을 확정하였다.

② 우수 R&D 성과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유망성과 창출기업을 선정하고, ❶시장조사-컨설팅·❷기반조성·❸기술마케팅 활동에 대한 예산을 현지 무역관 및 기관을 통해 사업 지원을 추진하였다.

③ 우수성과 200선 및 2025 코테페 전시참여 기업 대상 “해외진출 수요조사” 실시
우수성과 200선 기업·기관 205개, 전시기업 58개, AI 팹리스 특별전시 참가기업 9개 등 총 272개 기업·기관을 북미, 유럽, 일본, 아시아, 중동지역 무역관에 송부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다수인 기업의 방한을 유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수성과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KEIT-KO◆◆◆ MOU”를 체결하여 2025 코리아 테크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추진(2025.12.03.)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글로벌 해외기업과 “매칭 상담회”를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실장)은 우수 R&D 성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기여한 관련자에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관련자]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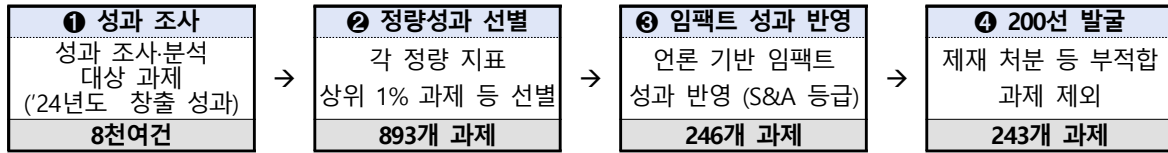
4급(선임)

◇◇◇

종합감사(R&D사업) 모범사례5

순번	소 속	직 급	성 명
5	○○○○○○○○실	4급	◇◇◇◇
제목: 적극행정을 통한 우수 R&D 성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역할 확장 - 체계적인 KEIT-KO◇◇◇◇ 협력으로 꽃피운 K-테크 수출역량 지원			
추 천 내 용			
□ (추진배경) “좋은 기술은 있는데, 해외 바이어는 어떻게 만나요?”			
○ 국가 R&D에 매년 수조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개발기술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어 ‘ 중이 위의 성과 ’에 그치는 한계가 존재 * 우리 원은 2025년 R&D 지원 과제 기반 우수성과 200선을 발굴하였으며, 다수의 기업·기관에서 해외 바이어 연결 어려움으로 기술 상용화 지연 호소			
- GDP 대비 R&D 투자율 세계 2위, R&D 투자 규모 4위 vs 성과는 12위 - OECD 통계 데이터 www.oecd.org/en/data.html			
○ 한편, KO◇◇◇◇는 전 세계 129개 무역관을 통해 매년 10만 건 이상의 수출 상담을 주선하고 있으나, 국내 우수한 기업의 정보 부족 한계 가 존재 ○ 이에 KEIT 지원 우수과제 수행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의 빈틈없는 R&D 성과 발굴·지원 필요			
KEIT 산업기술 R&D 우수성과 기업 발굴 성과조사·분석 → 언론기반 임팩트 분석 → 우수성과 200선 발굴 ⇒ KO◇◇◇◇ 해외진출 지원 및 성과촉진 확산 무역관 해외수요 발굴 → 해외수요처 매칭 → 맞춤형 마케팅 (전시, 투자유치, PoC, 현지거점 입주 등)			
□ (추진내용) KEIT-KO◇◇◇◇가 협력하여, “우수성과 발굴→해외마케팅 지원→글로벌 바이어 매칭→수출계약까지” 원스톱 직행!			
○ 2025 KEIT 우수성과 200선 발굴 ! “정량 상위 1% 성과 + 언론 빅데이터”			
- (상위 1% 정량성과) 성과조사 결과인 매출(수출, 내수), 특허(출원, 등록, 삼극특허), 추가 투자, 신규 고용 등 각 정량성과 지표별 상위 1% 성과 창출과제 선별 * 삼극특허, mrnIF 등의 질적 지표 강화로 양적·질적 성과 모두 반영			
- (임팩트 성과) 과제 정량성과 뿐만 아니라 정성성과 반영 을 위해 언론 데이터 기반 임팩트 성과(기업성과) 를 과제별 등급으로 반영 *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과제 키워드 조합 기반 쿼리를 이용하여 과제 관련성 있는 언론 데이터 수집			
- (200선 확정)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제재 처분, 문제 과제 등 부적합 과제 제외 후 2025 KEIT R&D 우수성과 200선 확정			

< 2025 KEIT R&D 우수성과 200선 발굴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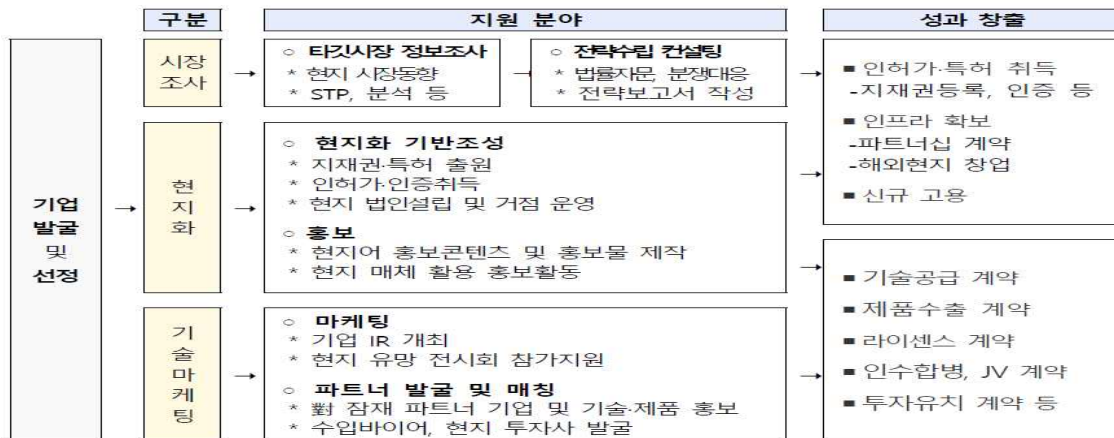
* 과제별 성과기관 중복으로 인해 200선 기업·기관 수는 205개

○ **우수 R&D 성과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 － (사업내용) 유망성과 창출기업을 선정하고, ①시장조사-컨설팅·②기반조성·③기술마케팅 활동에 대한 예산을 현지 무역관 및 기관을 통해 지원

* (지원방식) ①KO◆◆◆ 해외무역관을 통한 현지 집행, ②기업 자체 집행후 환급

< R&D 선도기업 지원사업 중점 지원프로세스 및 성과 >



○ **우수성과 200선 + 2025 코테페 전시참여 기업 대상 “해외진출 수요조사” 실시**

- － (조사 대상) 우수성과 200선 기업·기관 205개, 전시기업 58개, AI 팹리스 특별전시 참가기업 9개 등 총 272개 기업·기관

* (조사내용) 해외 진출희망국가, 수요처 및 타깃바이어 유형 등

- － (해외기업 유치) 조사 대상 리스트를 북미, 유럽, 일본, 아시아, 중동지역 무역관에 송부하여 상담희망 다수인 기업의 방한유치 추진

□ **(추진성과) 긴밀한 업무협력 체결 및 우수기업-해외 바이어간 매칭 성공**

○ **우수성과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KEIT-KO◆◆◆ MOU” 체결**

* 2025 코리아테크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추진(25.12.03)

< KEIT-KO◆◆◆ 업무 협력 주요 내용 >

1. 산업 R&D 우수기업의 KO◆◆◆ 해외진출 지원사업 지원 가산점 부여, 해외무역관 입주지원, 해외 전시회 및 상담회 개최 협력을 통한 R&D의 성과 확산 협력
2. 산업 R&D 수행기업(AX 분야 포함)의 실증, 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 협력
3. 해외 산업 R&D 기술 및 시장 동향 정보수집 협력
4. 양 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내 기업을 위한 세미나, 상담회, 포럼 등 개최 협력
5. 기타 양 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내 기업의 성과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글로벌 해외기업과 “매칭 상담회” 실시**

* 2025 코리아테크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우수기업-글로벌 바이어 매칭 상담회 추진

<주요 전시기업 수요조사 결과>

구분	기업명	수요조사 내용
일반 전시 (7)	신○	· 진출희망국 : EU, 인도 · 타깃바이어 : 자동차용 배터리, ESS 제조사
	넥○○○	· 진출희망국 : 중국, 미국, EU, 일본 · 타깃바이어 : 완성차 제조사 및 Tier 1급
	페○○○○	· 진출희망국 : 독일, 일본, 미국 등 · 타깃바이어 : 완성차 제조사 및 Tier 1급
	세○	· 진출희망국 : 동남아, 북미, 유럽 · 타깃바이어 : 제조공장 및 공장용 장비·시스템 공급사
	쿤○	· 진출희망국 : 동남아, 일본 · 타깃바이어 : 통신사, 스마트시티 시공사 등
	다○○○○	· 진출희망국 : 동남아, 일본 · 타깃바이어 : 통신사, 스마트시티 시공사 등
	데○○○	· 진출희망국 : 중국, 동남아, 일본 등 · 타깃바이어 : 제조공장 및 공장용 장비·시스템 공급사
AI 특별관 (4)	퓨○○○○○	· 진출희망국 : 북미, 일본, 아시아 · 타깃바이어 : 통신사, 금융사, 데이터센터 공급사
	리○○○	· 진출희망국 : 북미, 일본, 아시아 · 타깃바이어 : 통신사, 금융사, 데이터센터 공급사
	하○○○○	· 진출희망국 : 북미, 일본, 아시아 · 타깃바이어 : 통신사, 금융사, 데이터센터 공급사
	답○○	· 진출희망국 : 북미, 일본, 아시아 · 타깃바이어 : 온디바이스 AI 제품 제조사, 통신사 등

<주요 해외기업 수요조사 결과(11.13 기준)>

해외기업명	국가	분야	상담희망기업
Vectors Capital	미국	글로벌 VC	인○○ 등
Global Innovation Labs			AI, 로봇, 반도체 기업 등
ORLIB Ltd	일본	배터리	브○○○○ 등
Groxi inc			에○○○○○○○○○○ 등
Prettl Group	독일	자동차모듈 공급	다○ 등
Telekom Serbia	세르비아	통신사	니○○○ 등
Telkomsel	인도네시아	통신사	퓨○○○ 등
Innovation Cloud Service		로컬 클라우드	
Inovasi Konversasi Digital		SI 기업	

⇒ 코리아 테크페스티벌(25.12.3~5) 상담매칭을 통해 현재 약 3건(약 300만불 규모)의 계약체결 논의가 진행될 예정

□ **(향후계획) KEIT-KO◆◆◆ MOU를 계기로 추가 매칭 방안 지속 고민**

- **(상담주선시스템)** KO◆◆◆가 보유한 상담주선 시스템인 마이스허브 시스템을 이용, 참가 국내외기업간 상담 신청 및 자동 주선 지원
- **(안내)** 상담주선 시스템에 대한 대 참가기업 홍보 강화를 통해 원활한 상담 수행 가능하도록 KEIT와 KO◆◆◆가 지속적 협력 추진
- **(기타)** MOU 후속으로 KEIT의 우수성과 과제 정보 지속 제공